

<b>의안 번호</b>	<b>2570</b>	<b>[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1차)(안)]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3. 24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3. 24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4. 6.(월)

### 2. 제안이유

-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 계획의 변동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및 예치금 등 지출 계획 변동이 있어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기금 조성액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5년도 말 조성액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
		수 입	지 출	증 감	
기정(당초)	14,257,969	842,470	5,400,000	△4,557,530	9,700,439
변경(1차)	14,257,984	915,678	7,686,000	△6,770,332	7,487,662

○ 2026년도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항 목	수입금액	기정액	증 감
계	15,173,662	15,100,439	73,223
예치금회수	14,257,984	14,257,969	15
이자수입	395,678	322,470	73,208
기타수입 (공유재산매각수입)	520,000	520,000	0

- 2026년도 수입계획 (15,100,439천원 → 15,173,662천원, 증 73,223천원)
- 예치금 증가 (14,257,969천원 → 14,257,984천원, 증 15천원)
- 이자수입 (322,470천원 → 395,678천원, 증 73,208천원)
  - 정기예금 만기 이자수입 합산 재예치로 이자수입 변경
- 기타수입(공유재산 매각수입): 520,000천원 (변동없음)
- 예치금: 14,257,984천원 ※ 정기예금으로 예치

○ 2026년도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항 목	지출금액	기정액	증 감
계	15,173,662	15,100,439	73,223
비용자성사업비	7,686,000	5,400,000	2,286,000
예치금	7,487,662	9,700,439	△2,212,777

- 2026년도 지출계획 (15,100,439천원 → 15,173,662천원, 증 73,223천원)
- 비용자성 사업비 (5,400,000천원 → 7,686,000천원, 증 2,286,000천원)
  - 공사 계약관련 공사비(7,606,000천원) 및 감리비(80,000천원) 반영
- 금융기관 예치금 (9,700,439천원 → 7,487,662천원, 감 2,212,777천원)

#### 4. 근거법령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조, 제3조, 제4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계획의 변동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반영 및 예치금액 변동 등 지출계획 변동이 있어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2조(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)**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 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전출금
2. 국, 공유재산 매각대금
3. 지방채 발행
4. 울산광역시 보조금
5.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6. 그 밖의 수익금

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청사 부지 매입비
2. 신청사 건축비
3.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
4.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

**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